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보담당관 이준호

전화 02-530-4154 / 팩스 0502-193-1199

보도자료

2024. 6. 21.(금)

제목

전세대출금 사기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법방해사범 6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39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총책·모집책·허위임차인들 간에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하여 실제 임차인이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한 단서를 포착하였고,

-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질서방해사범 총 6명*(위증교사 2명, 위증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허위임차인 모집책 1인의 경우 위증 및 위증교사에 모두 해당

- 특히, 본건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총책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 및 그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사법질서교란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하여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

사건 개요

① 피고인

- A(전세대출 사기 총책)
- B(허위임차인 모집책)
- C, D, E, F(허위임차인)

② 공소사실 요지

● 원 사건 공소사실 요지

- A는 '17. 12.~20. 9.경 신축빌라를 물색하고 허위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임차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세기간 만료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도록 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39억 8,7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 위증교사 및 위증 공소사실 요지

- A는 허위임차인 C·D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증교사
- B는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허위임차인 E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증, 위증교사
- C·D·E·F는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

2

사건 진행경과

- '20. 11. 19. A 구속 기소
- '23. 9. 13. A 1심 선고(징역 7년)
- '23. 9. 18. 검찰 및 A 항소제기
- '24. 2.~6. 허위임차인들이 전세목적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위증 정황 포착, 사건관계인들 조사
- '24. 6. 12. 피고인들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 인지
- '24. 6. 18. A~F 각 불구속 기소

3

이 사건 수사의 의의

- 위증은 실제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진범이 처벌을 면하는 한편,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하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총책 A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F(5명)가 진실한 전세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 전세 목적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 공판검사가 C~F(4명)에 대하여 대화내역 확보 등 수사를 통해 위증의 배후로 총책 A 및 모집책 B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인 위증의 전모를 밝혀 위증사범 6명을 적발하였음

4

향후 계획

- 최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